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사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지능정보화기획팀, 국제개발협력팀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민원 제도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민원 운영팀을 신설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개발협력지원팀 및 고객지원팀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외국인력담당관·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외국인력담당관·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을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능정보화 실행계획 포함)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협의·조정

4.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6.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운영
 7.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9.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 ⑰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 포함)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분야의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제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 고용노동분야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적자원개발작업반 및 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과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6.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고객지원팀장”을 각각 “민원운영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안·청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내·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1항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점검·시정
제7조제1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노사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의 점검·시정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를 각각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5”를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능정보화기획팀, 국제개발협력팀 및 민원운영팀은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과 민원운영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민원운영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보

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 락)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 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국제 협력담당관 · 외국인력담당관 ·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 원팀장을 둔다.</u>	⑤ ----- 기획재 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 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 책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국 제협력담당관 · 외국인력담당관 · <u>지능정보화기획팀장 및 국제 개발협력팀장</u> ---
⑥ <u>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 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국제협력 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 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정보화기획 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은 과 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u>	⑥ ----- ----- ----- ----- ----- ----- ----- <u>지능정보화 기획팀장 및 국제개발협력팀장</u> ----- -----.
⑦ ~ ⑬ (생 락)	⑦ ~ ⑬ (현행과 같음)
⑭ <u>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u>	<u><삭 제></u>
1. 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 · 중	

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홈페이지·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삭제

8. 고용노동부 학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8의2.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9.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운영

9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

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

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12.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3.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

화에 관한 사항

⑮ 개발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

좌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

력 업무에 대한 기본계획 수

립 및 총괄·조정·지원에 관

한 사항

2. 다자 간 국제개발협력에 관

한 사항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연합(UN)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3. 부 내 공적개발원조(ODA)사

업의 총괄·조정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회의, 아시아

<삭 제>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
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
EAN)+3, 세계은행(IBRD) 고
용노동분야 회의 참석·대응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과독 광부·간호사·간호
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
하였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의 보호

<신 설>

⑩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 전략계획 및 시행계
획 수립(지능정보화 실행계획
포함)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
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
과평가 및 성과관리 수준진단
에 관한 사항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

<신 설>

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협의·조정

4.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6.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운영

7.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
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

9. 고용노동 분야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및 데이터기반행
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 재난 관리에 관
한 사항

11.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
화에 관한 사항

⑰ 국제개발협력팀장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
좌한다.

1.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
력(공적개발원조 포함) 총괄
·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관) ①·② (생략)

2. 고용노동분야의 다자간 국제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제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고용노동분야 회의 대응 및 협력사업 추진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 고용노동분야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적자원개발작업반 및 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5.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6.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 제4조(감사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고객지원팀장을 둔다.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
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
로 보한다.

⑤ (생략)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서
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
선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
항

4. 내·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
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
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

③ -----
민원운영팀장-----.

④ -----

민원운영팀장-----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무의 운영 지원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처리 관련 직원 고충개
선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⑦ 민원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서
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
선에 관한 사항

3. 제안·청원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

4. 내·외부 고객지원 기본계획
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
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
항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
무의 운영 지원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⑩ (생략)

⑪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신 설>

<신 설>

15. (생략)

⑫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3. (생략)

14. 노사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시정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10. 민원 담당 직원의 고충개선 및 직원보호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현장의 총괄·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노동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14. (현행과 같음)

15.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점검·시정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⑫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현행과 같음)

14. 노사관계 법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의

15. (생 략) ⑬ ~ ⑰ (생 략) 고용노동부령 제8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은 2024년 9월 2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화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개발협력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각각	<u>점검·시정</u> 15. (현행과 같음) ⑬ ~ ⑰ (현행과 같음) 제1조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

보좌한다.	
고용노동부령 제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고객지원팀장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고객지원팀장이 감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고객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분장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1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5의 정원 2 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 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 속한다.	<u><삭 제></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u>	<u>10</u>	-2
일반직 계	<u>12</u>	<u>10</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u>5</u>	<u>3</u>	-2
·	·	·	
·	·	·	